

#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4661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7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오세희 · 용혜인  
서영석 · 허종식 · 박 정  
이수진 · 김남희 · 송재봉  
손명수 · 전용기 · 김 윤  
이해식 · 박홍근 의원  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지·보조기 기사,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는 의료인,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직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의지·보조기 기사,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74조제3항 등).



#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나”를 “사람이나”로,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해당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74조(응시자격 제한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는</u>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| 제74조(응시자격 제한 등) ① --<br>-----<br>----- <u>사람은</u>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4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<u>자나</u>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<u>자는</u>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 | ② -----<br>-----<br>----- <u>사람이나</u> -----<br>----- <u>사람은</u>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<u>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</u>                 | ③ <u>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</u> |